# (건축-006) ○○플러스 리모델링현장 슬래브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○○ 근린생활시설 보강공사			
사고일시	2018년 1월 17일(수) 10:30분경		기상상태	흐림
소재지	전라북도 전주시	사고 종류	무너짐(붕괴·도괴)	
구조물 손실	슬래브	인적피해	사망 1명	
장비 손실	지게차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 ),	해당없음( 〇 )

# 가. 사고개요

## 1) 공사개요

용도 : 근린생활시설(리모델링)○ 공사기간 : 2018.1~2018.2

※ 인·허가기관에 리모델링 신고 및 허가 미실시

#### 2) 사고경위

○ 리모델링을 위해 1층 일부 바닥마감 등의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1층의 기둥 및 보 보강공사를 실시하던 중 2층 바닥슬래브가 붕괴되면서 1층의 작업자 1명 사망, 지게차 파손

#### 3) 사고원인

- 붕괴된 슬래브의 철근 정착불량 및 철근 누락
- 리모델링 계획 및 시공의 부적정
- 슬래브 지지를 위한 기둥철거 추정흔적이 발견(8개소)되어 기둥제거로 인한 슬래브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
- 기둥 및 보의 보강공사를 위해 설치된 잭서포트의 위치가 불균등하게 배치된 것으로 추정
- 지게차 작업 및 보강공사를 위한 천공장비 등의 진동이 2층 바닥슬래브 붕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

## 나, 재밬방지대책

- 해체공사 착수 전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제출·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구조물 해체공사 전에 설계도면, 구조계산서, 시방서, 공사비 내역서,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·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건물의 규모, 구조, 특징 등을 고려한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이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